

글로벌 인수 및 투자 관련 부패 방지를 위한 실사 절차 규정

목 차

제 1 장 총 칙

- 제 1 조 (목적)
- 제 2 조 (규정의 적용)
- 제 3 조 (용어의 정의)

제 2 장 글로벌 인수 및 투자를 위한 실사 조치

- 제 4 조 (단계별 실사)
- 제 5 조 (기초 실사)
- 제 6 조 (추가 실사)
- 제 7 조 (실사보고서 작성)
- 제 8 조 (계약 협상 시 점검 사항)
- 제 9 조 (거래종결 관련 조치 사항)

제 3 장 반부패 실사를 위한 실행 조치

- 제 10 조 (실사 관련 서류 및 자료 제공)
- 제 11 조 (교육)
- 제 12 조 (기록보관)

부 칙

전 문

에스케이에코플랜트주식회사 (이하 “회사” 라고 함)는 전세계에서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뇌물 수수와 부패를 금지하는 미국 해외 부패방지법을 포함한 각국의 법령 및 국제적 기준을 적용받고 있으며, 또한 회사의 특정 거래 또는 계약에 적용되는 무역 제재와 수출 통제에 관련된 제반 법규의 적용도 받고 있다.

해당 반부패, 무역제재 및 수출 통제 관련 법규를 위반할 경우, 회사 및 관련 임직원은 민형사상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인수, 투자, 매각 시 대상회사에 대한 실사를 통해 공무원과의 연관성 또는 부적절한 금원 지급의 위험성 등을 평가하고 대상회사의 중개인에 대해 Compliance Risk 유무를 점검하는 등 대상회사와의 거래로 인한 Compliance Risk 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에, 회사가 인수 및 투자를 위해 검토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Compliance Risk 를 점검, 확인, 관리할 수 있는 수단 및 절차를 임직원에게 제공하기 위해 본 규정을 제정하기로 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글로벌 인수 및 투자 관련 부패 방지를 위한 실사 절차 규정(이하 “규정” 이라고 함)은 회사가 인수 또는 투자하는 해외 기업(이하 “대상회사” 라고 함)에 대한 반부패 실사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 및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규정의 적용) ① 이 규정은 회사, 회사의 자회사 및 해외 지사의 모든 임원, 직원 등 회사, 자회사 또는 해외지사와 근로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여 단기, 상시, 정기 또는 임시 여부를 불문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임직원에게 적용된다.

② 회사가 지배적 지분을 보유하지 않는 합작투자회사 또는 투자회사의 임직원의 경우에도 해당 합작투자회사 또는 투자회사에 대한 회사의 영향력에 따라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관부서” 는 ESG 센터 산하의 글로벌 Compliance TF 를 말하며, 글로벌 Compliance TF 는 이 규정에 따른 절차의 이행, 관리, 감독 등 이 규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한다.

2. “**담당부서**”는 글로벌 인수 및 투자 관련한 거래에 대해서 대상회사에 대한 검토, 대상회사와의 계약 협의, 거래 종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부서를 말한다.
3. “**기초실사**”는 글로벌 인수 및 투자 관련 계약 협상 개시 전에 대상회사에 대한 공개된 정보 만으로 대상회사와의 거래로 인한 잠재적 Compliance Risk를 점검 및 확인하기 위한 실사를 말한다.
4. “**거래**”는 글로벌 인수 및 투자를 위해 대상회사와 인수 및 투자 계약 등 인수 및 투자에 수반되는 모든 법률행위를 말한다.
5. “**거래종결**”은 글로벌 인수 및 투자 관련 계약 체결 후 합의된 선행조건이 완결되어 해당 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 및 지분 인수 등이 완료되는 시점을 말한다.

제 2 장 글로벌 인수 및 투자를 위한 실사 조치

제 4 조 (단계별 실사) 글로벌 인수 및 투자 거래와 관련하여, 효율적이고 철저한 실사를 위해 해당 거래의 진행 추이를 고려하여 주관부서는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단계별 실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 5 조 (기초실사) ① 담당부서는 대상회사와의 인수 및 투자 거래 관련 협의를 진행하기 전에 대상회사에 대한 기초 실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대상회사에 대한 기본 정보를 주관부서에 전달한다.

② 주관부서는 대상회사에 대한 기본정보를 토대로 아래와 같이 기초 실사를 실시한다.

- 거래상대방의 배경 정보 및 잠재적 Compliance Risk 확인
- 공개된 정보를 토대로 대상 회사의 주주들에 대한 실사
- 필요한 경우, 독립적인 실사 업체 및 해당 국가의 변호사를 통한 추가 및 보완 실사 실시
- 대상회사의 주요 계약 및 거래에 대한 실사
- 회사의 제한 업체 명단에 등재된 업체 명단과 대조하여 대상회사 또는 대상회사의 주주들이 해당 제한 업체 및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확인

③ 기초실사 중 대상회사의 주요 계약 및 거래에 대한 실사와 관련하여, 회사가 미국 법무부 및 미국 국방부와 체결한 형사합의(Plea Agreement), Compliance 집행합의(Administrative Compliance Agreement)에 따른 회사의 Compliance 의무와 관련한 제한 사항이 대상회사의 계약 및 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 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대상 회사가 미국 정부계약(주계약업체 또는 하청업체로서)을 보유하고 있는지, 미국 정부계약이 있다면 해당 계약이 대상회사 사업의 중요한 부분인지, 제안된 대상회사와의 거래에서 분리될 수 있는지, 또는 거래가 체결되면 즉시 해지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초실사 과정에서 신속히 확인해야 한다.

④ 주관부서는 기초 실사에서 확인된 기초 실사 결과물을 토대로 MOU 체결 등 거래 진행 여부 및 추가실사 진행 여부에 대해서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대상회사 임직원에게 대한 인터뷰 등 추가적인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 6 조 (추가실사) ① 주관부서는 기초실사에서 확인된 대상회사의 Compliance Risk 등을 고려하여 추가실사 진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추가실사를 진행하는 경우 주관부서는 별지 서식 1의 반부패 및 국제무역 Compliance 실사 설문지(이하 “실사 설문지”라고 함)를 대상회사에 발송하여야 한다.

② 필요한 경우, 실사 설문지를 통한 실사와 함께 아래 내용을 포함한 추가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 독립된 실사 업체 및 외부 변호사를 통한 강화된 실사
- 대상회사의 핵심 직원 또는 대상회사 또는 거래와 관련된 다른 개인들과의 인터뷰
- 독립된 회계 법인에 의한 실사 (불투명한 회계 처리 등 관련 위험이 높은 투자 건의 경우)
- 추가적인 Compliance 사항(반독점, 무역 규제) 검토

③ 실사 설문지에 대한 답변 및 실사 결과물을 토대로 아래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 요청한 정보 또는 문서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제공되지 않는 이유를 파악하고 대상회사, 자문 변호인 또는 기타 유관부서와 추가 실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후속 협의 실시
- 실사 과정에서 검토된 내용, Compliance 실사 결과, 확인된 Compliance Risk 등 거래 진행 시 Compliance Risk 최소화를 위해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 등에 대한 서면 보고서 작성

④ 주관부서는 실사 결과에서 확인된 Compliance Risk 를 토대로 실사 의견을 담당부서에 전달하고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거래 진행여부를 결정한다.

제 7 조 (실사 보고서 작성) 대상회사와 거래를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 주관부서는 거래 진행에 필요한 경영진 또는 이사회 승인 전 아래 내용을 포함한 최종 실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실사보고서는 경영진 또는 이사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 확인된 Compliance 점검 사항을 고려한 거래 구조 및 조건과 관련한 제안 (거래 구조와 관련한 수정 제안에 따른 Compliance Risk 평가, 실사 과정에서 확인된 Compliance Risk 의 경감을 위해 인수 또는 투자 계약에 반영해야 할 계약 조항 포함)
- 실사에서 확인된 Compliance Risk 의 점검을 위해 계약 체결 또는 거래종결 전에 대상회사 및 회사가 취해야 하는 조치
- 확인된 Compliance Risk 와 관련하여 거래종결 후에 취해야 하는 조치
- 현지 정부기관 또는 다른 정부기관에 대한 거래의 공개 필요성

제 8 조 (계약협상 시 점검사항) ① 대상회사와의 거래 관련 계약 협상 시, 주관부서는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실사 과정에서 확인된 Compliance Risk 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약서 초안 및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Compliance 관련 규정 반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경영진 또는 이사회 보고 또는 승인 과정에서 대상회사와의 계약 관련하여 제기된 Compliance 점검 사항들에 대한 조치 실시 및 조건 반영 여부도 확인하여야 한다.

제 9 조 (거래종결 관련 조치사항) 주관부서는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거래종결 전에 아래 조치사항을 포함하여 대상회사에 대한 Compliance 관점에서의 통합절차 이행을 위한 준비를 실시하여야 한다.

- 거래종결 후 Compliance 실사 및 Risk 평가 계획 작성 (실사 과정에서 확인된 Compliance Risk 에 대한 조치 계획 포함)
- 관련 정부기관 공개 필요 사항 점검

제 3 장 반부패 실사를 위한 실행 조치

제 10 조 (실사 관련 서류 및 자료 제공) 본 규정에 따른 실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주관부서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담당부서는 본 규정에 따른 실사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가 시의 적절하게 준비 및 실시될 수 있도록 주관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 11 조 (교육) 주관부서는 본 규정과 관련하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들에게 정기적인 교육을 제공하여야 하며, 관련 임직원들은 해당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 12 조 (기록보관) 거래와 관련 서류, 실사 보고서 등 이 절차와 관련된 모든 자료와 문서는 최소한 5년 또는 법률이나 다른 규정에서 보다 장기의 기간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기간동안 보관해야 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22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